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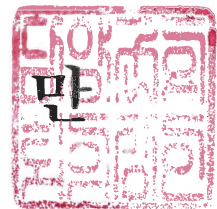
담양군의회 규칙 제9호

공 포 문

담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2. 07. 22.)에서 의결된
담양군 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
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7월 26일

담양군의회 의장 최 용



붙임 담양군 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.

담양군 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「담양군 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
→「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
-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“제57조”를 “제65조 및 제66조”로 수정
- 제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
- 제10조(의견수렴), 제11조(비밀의 엄수), 제12조(준용) 신설
- 관련서식 제1호~제3호 신설

3. 개정규칙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 및 제66조

5. 관련부서 의견 : 불요

담양군의회 규칙 제9호

담양군 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5조 및 제66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간사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, 위원, 간사선임은 「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9조, 제10조, 제12조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위원회 개최의 통지)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·위원장 및 의원(이하“심사요구의원”이라 한다)

2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대상자(이하“심사대상의원”이라 한다)

제4조(심문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대상의원과 그와 관련된 의원, 심사요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

제5조(발언 및 해명)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,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 한다.

제6조(증빙서류 등의 제출)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·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.

제7조(통고) 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,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윤리심사 결과 또는 징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한다.

제8조(제척과 회피) ① 위원을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9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

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.
- ④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
 - 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- 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- ⑤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자문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⑥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「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의견수렴)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

제11조(비밀의 엄수) 위원과 자문위원 또는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2조(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담양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발언(해명) / 대리발언(해명) 신청서(제5조 관련)

| 발언(해명) / 대리발언(해명) 신청서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. 발언(해명)건명 | | |
| 2. 심사대상의원 (피심의원) | 성 명 | |
| | 소 속 위원회 | |
| 3. 발언(해명)을 할 다른 의원 | 성 명 | |
| | 소 속 위원회 | |
| 4. 발언(해명)하고자 하는 내용 | | |
| <p>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(해명) / 대리발언(해명)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신청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</p> | | |
| 비 고 |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| |

